

타행 자동이체 신.구약관 비교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1조 ~ 9조 (생략) 신설</p> <p>제10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이전까지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개별통지하고 동시에 은행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서비스를 해지 할 수 있음을 알리고, 그 밖에는 은행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</p> <p>② 거래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동 기간 안에 거래처의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</p>	<p>제1조 ~ 9조 (좌동) 제10조 계좌이동서비스 ① 타행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,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약관을 준용합니다.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(www.payinfo.or.kr)에 자동이체 등록 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,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. ③ 거래처는 은행 지점, 인터넷뱅킹(모바일뱅킹 포함),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(www.payinfo.or.kr)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④ 거래처가 은행 지점, 인터넷뱅킹(모바일뱅킹 포함),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(www.payinfo.or.kr)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당행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타은행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, 당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 됩니다.</p> <p>제11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.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. 다만 기존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 ③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</p>	<p>계좌이동서비스 신설</p> <p>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10028 호개정내용 반영</p>

<p>11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 금거래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, 관련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.</p>	<p>한 것으로 봅니다.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 제12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 금거래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, 관련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</p>	
---	--	--